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 1.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2.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금산군-튀르케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4.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6.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8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예산 감소 및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효율적, 전략적 재정 운 용을 위하여 2025년도 한도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군민 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발 행 액: 354억원 (2025년 한도액 범위 내)

O 발 행 연 도 : 2025년

O 대 상 사 업 : 2개 사업

- 사회기반시설 투자 : 354억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액(~24년	년까지)	2025년			향후투자
시 법 경		국도비	군비	지방채	국도비	군비	지방채	군비
계	64,933	13,740	11,769	0	1,396	2,628	35,400	0
도시재생사업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41,075	6,000	11,307	0		68	23,700	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신축)	23,858	7,740	462	0	1,396	2,560	11,700	0

O 기 채 선 : 군금고은행

O 기 채 방 법 : 증서차입

○ 발 행 금 리 : 발행시점 금리 적용 ※ '25.3월 기준 3.94% (군금고 약정서 적용)

- 2025년 : 354억원 * (상환) 매년 연장 / (이율) 3.94%적용

(단위 : 억원)

구분	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합계	443.3	43.9	42.8	41.6	40.4	39.2	38	36.8	35.7	34.5	33.3	32.1	25
원금	354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4
이자	89.3	13.9	12.8	11.6	10.4	9.2	8.0	6.8	5.7	4.5	3.3	2.1	1.0

※ 여유재원 발생 시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부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O 상 환 조 건 : 매년 연장 ※ 자금 확보 시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 경감 계획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과 보건 소 이전 신축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최대 한도액인 354억 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밀도 있는 세수 예측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됨. 2025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이미 세수 부족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교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기금마련, 예비비 확보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 판단됨.
- 두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 미흡했다고 생각됨.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좀더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서 필수적이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또는 규모 축소가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됨.
- 세 번째 수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 있음. 예컨대 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는 수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공모 당시에는 176억 원이었으나 2차 공모와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사업비는 441억 원으로 최초공모 때보다 265억 원이 증가되었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도 2021년 최초 사업계획 때는 114억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224억원으로 110억원이 증가되었음.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최초 사업비보다 2배가 넘는 설계 변경은 초기 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 O 네 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됨. 지방채

발행 요건에 대해「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출한 2025~2029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조성사업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비가 명확히기재 되어 있지 않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준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2026년에 13억 9천만 원 등 2037년까지 총 89억 3천만 원의 이 자비용을 부담하느니만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더불어 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예컨대 우 리군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등 재정건전 화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 별첨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부.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제21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이 복잡화되면서 민원의 다양성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많은 분야에서 갈등 및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 대·운영하여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항)
- O 별지서식 정비(안 제8조)
-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O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이 점점 복잡화되고 민원의 다양성 과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여 안정적 인 법률 자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우리군은 매년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복잡한 법리 해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를 통해 법률 자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각종 행정처 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충청남도의 군 단위 고문변호사의 조례상 위촉 평균 인원은 3.8명이고 실제 위촉 평균 인원은 3명인 점을 참고하여 너무 과도한 인원을 위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법률고문의 수당 지급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자문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법률고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과 노력도 필요하다 사료됨.
- 그밖에「지방자치법」제28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튀르케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5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O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한국 전쟁 참전을 시작으로 '형제의 나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 국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위한 우호협약 체결
- 탈라스구는 우호교류 협정관계를 넘어 자매도시로서 격을 높여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작년 우호교류 협약 이후 적극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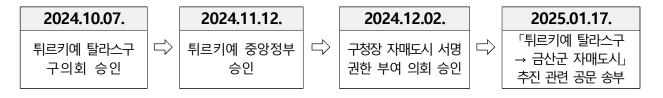
로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의지를 표명하며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 O 금번 자매도시 협정 체결로 진일보된 양도시간 국제협력의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 농업, 문화(축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의 교류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자매도시 체결일 : 2025년 상반기 / 금산삼계탕축제 초청 예정
- O 협정 주요내용
- 양 도시는 친선과 공동번영 도모를 위하여 행정·사회·경제·문화·교육·보건·체육·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
- 상대 도시의 유·무형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협력

○ 그동안 추진현황

- 튀르키예 탈라스구 방문 및 「우호도시 협력 양해 각서」체결 : 24.09.27.
- 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승인 절차 이행



- 본 동의안은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의 '우호도시 협력 양해각서'체결 이후, 행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 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O '자매도시' 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

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 금산군의 지금까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먼저 자매결연 체결 도시로 1995년 중국 연변주 안도현, 2014년 베트남 벤째성 벤째시 등 2개소가 있으며,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2006년 중국 칭다오시 등 4개 도시, 2023년 필리핀 포락시 등 4개 도시, 2013년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 2015년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2018년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2024년 베트남 라이쩌우성, 2024년 튀르키예 탈라스구, 2024년 몽골 다르항올도 등 총 8개국 14개 도시와 우호 협력을 맺고 있음.
-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튀르키예 탈라스구는 지리 적 특성으로는 튀르키에 중부에 위치하며 금산군 면적의 약 75% 의 면적이고, 인구는 17만명 정도로 금산군 인구의 3.5배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이며, 산업 구조는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인근에 산업 허브인 카이세리시와 경전철을 통해 연 결되어 있어 카이세리 공단에 다수의 주민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로는 탈라스 국제문화예술축제, 탈라스 히드렐레 스축제, 탈라스 전통공예품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자매결연 체결 시 인근 상업 도시인 카이세리시를 통한 인삼 수 출과 금산세계인삼축제와 튀르키예 축제를 연계한 문화·관광 교류가 예상되고 있음.
- O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1995년부터 시작된 기존 1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상

황을 비추어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휴 시에는 자매결연 대상도시의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검토와, 산업·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검토, 교류를 통한 실익 기대성 검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총괄적 교류의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또한 탈라스구와의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부족해 보이고, 금산군 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협 의체인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내부적 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양쪽 도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매결연 체결에는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이 수반되고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책임성과 신뢰가 뒤따르는 중대한 결정임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밀도있게 살펴서 자매결연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 별첨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부.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2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산세계인삼축제가 한국의 축제 도시로 선정된 것을 발판 삼아 아시아축제 도시 및 세계 축제 도시 선정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조례명 변경
-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O 재단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 금산문화관광재단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 O 개정 법령명 반영(안 제4조제4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재단 명칭에 '축제'를 추가하여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 별첨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3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O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O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O 위탁사무명: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 O 위탁사무의 내용
 -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 이용객의 관리 및 불편 민원사항 해소
-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군수가 캠핑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 2025. 05. 01. ~ 2028. 04. 30.(3년)
- 위탁사용료 : 12,573,650원✓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산출함
- 선정방법: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공개모집 후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자선 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O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본 동의안은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위탁기간 종료가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산군 산꽃 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우리군에 몇 개 안되는 캠핑과 휴양을 경하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 별첨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4호 2025. 3. 18.(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5. 3. 6.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5. 3. 6.

라. 상 정 일 : 2025. 3. 18. (제3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O 제안설명 : 손계원 기획전략국장

O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과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 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진산면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자 함.

- O 위탁사무명 :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
- O 위탁사무의 내용
-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및 야외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

- 진산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 「진산역사문화관」운영 안내를 통한 진산의 역사문화자원 홍보
-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O 위탁기간 : 2025. 5. 16. ~ 2027. 5. 15.(2년)
- 선정방법 :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수탁 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O 소요예산 : 수탁자 부담
- O 위탁범위 : 토지 3필지, 건물 1동(부지내 진산역사문화관 건물은 제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물건)	면적(㎡)
	금산군	353-1	학교용지	9,850
토지	진산면	354-2	대지	578
	지방리	353-2	대지	79
		10,507		
건물	금산군 진산면 353-1 지방리		교육관 ※본 번지 내 「진산역사문화관」건물은 제외함	477
		477		

- 본 동의안은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위탁 기간 종료가 다가옴 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산군 진산역사문 화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의거 민간 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 건으로.
- O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은 천주교진산성지성당과 진산역사문화관

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 수행 방 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2명, 찬성 2명, 반대 0명)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 별첨 진산역사문화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부.